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안)

2005. 3.

환 경 부
환 경 정 책 실



I. 1

II. 2

III. • ()..... 3

IV. 5

V. 5

화학물질 수입 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안)

I. 현황 및 문제점

□ 수입 화학물질 관리실태

- 화학물질 수입시 신규물질인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¹⁾(법 제7조), 기 지정된 유독물 및 관찰물질²⁾ 수입시에는 신고(법 제12조 및 제13조)토록 규정
- 유해성 심사는 국립환경연구원,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는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임 또는 위탁(영 제25조)
 - 동 업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확인(단속) 기관은 별도 위임 되어 있지 않음
 - ※ 유해성 심사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³⁾
- '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이후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가 관련규정 미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

□ 수입 화학물질 관리실태 조사결과

- '04.11월 수입 화학물질 유통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합동조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이행여부 등

1) 유해성 심사 대상물질 : 물질별 100kg(함유량 100%환산)이상/년, 법인별

2) 유독물 : 546종, 관찰물질 : 17종

3) 개정된 유해법에서는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의 수입신고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

○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5개 업체 모두 관련규정 미준수⁴⁾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은 4개 업체 24개 물질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은 4개 업체 13건
- ※ 유해성 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은 수입을 할 수 없음

《 유해성 심사 및 수입신고 미이행 현황 》

구분	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계(건수)	37	1	2	7	18	9
- 유해성 심사 미이행	24	-	2	6	14	2
- 수입신고 미이행	13	1	-	1	4	7

○ 법령 미준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실적인 여건 및 제도적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대부분 수입업체는 제조사의 국내지사 등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으나 수출국이 선진국인 경우 기업비밀, 개도국인 경우 규정미비 등의 이유로 성분내역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료 확인이 곤란
- 신규화학물질의 확인은 전문지식을 요하고, 수입 건수가 많은데 비하여 사후확인기관 미지정, 수입관련 서류보존 의무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 사후관리기반 미흡

II. 수입 화학물질관리 기본방향

□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06.1.1) 전에 화학물질 수입관련 위법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기간내 자진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 법무부, 환경부 합동으로 추진

4) 화학물질 사용업체 3개소, 수입업체 2개소이며 수입을 위탁한 경우에는 하주(사용업체)에게 수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

- 자진신고기간 이후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법 적용
 - 국립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수입 화학물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수입화학물질 사후관리기관 지정, 수입관련 서류보존 의무화(기 조치) 등 사후관리기반 구축 등

Ⅲ.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안)

- 기간 : '05. 4. 1~9. 30(6개월, 유해성 심사 신청기간)
 - ※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유해성 심사신청이 증가할 경우 실험성적서 생산 및 유해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신고대상기간 및 물질
 - '02.4.1~'05.3.31 기간에 수입한 화학물질 중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 ※ '02.3.31 이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어 신고대상은 아니나 다시 수입하는 경우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 신고요령

○ 신고기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국립환경연구원(화학물질심사단)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고방법

- 신규화학물질은 붙임 4의 신청서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내 **유해성 심사를 신청**

△ 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 실험을 의뢰하였으나 의뢰일부터 **60일이 경과되어도 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붙임 5의 신고서에 시험의뢰서를 첨부하여 신고가능**

※ 실험 지연에 따른 신고기간내 신고를 못하는 사례 방지

-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은 붙임 6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기간내 신고

□ 신고자 혜택

-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 수입 허용**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기간내 신고(유해성 심사 이행)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면제**

○ 홍보방안

- 언론기관 홍보(보도자료 제공 등), **관보 공고**, 수입업체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행정기관 및 유관협회 인터넷·협회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방안

- 자진신고기간 이후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다량수입자, 위반의혹이 있는 업체를 선정, 집중단속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

IV. 관련부처 협조사항

- 관보 공고문 및 안내문 등에 공동명의 사용(법무부)
- 소속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산업자원부)
- 관할 지역내 유독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지방자치단체)

V. 향후 추진계획

-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 확정·시행('05.3)
-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 홍보('05.3)
-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05.4~9, 6개월)
- 유해성 심사 완료 및 운영결과 분석·보고('05.12)
- 특별단속계획 수립·시행('06.1~)

※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병행하여 제도개선 추진

- 붙임 : 1. 예상문제점 및 조치방향 검토 1부
2. 자진신고기간 설정에 관한 공고문 1부
 3. 안내문 1부
 4. 자진신고 서식 3부

(붙임 1)

예상 문제점 검토 및 조치방향

① 법적 근거 없이 위법사항의 일제 정리 또는 치유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 설정·운영을 통하여 처벌면제의 법적 문제점 검토

경찰청이 불법 무기류, 건설교통부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한 사례가 있음

《 자진신고기간 운영 사례 》

구 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주관부처	경찰청	건설교통부
참여부처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운영기간	'04.9.1~9.30(1개월)	'00.6.1~12.31(7개월)
대 상	총기, 폭발물류 및 도검류 등	방치폐공 및 불법지하수시설
처벌면제	출처불문 불법무기류 소지책임 면제	형벌 및 행정처분 면제,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
근거법령	없 음	없 음

변호사 자문결과

< 김&장 법률사무소 박상열 변호사)

○ 행정청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형벌을 면제하기는 어려우나 자진신고자를 고발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써 가능

※ 공무원이 공익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법 69노 558)

○ 법 집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타 행정청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능

< 법무법인 세계종합 황덕남 변호사)

-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 처분권의 행사에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추구하는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이 정당하다면,
- 자진신고기간의 설정·운영은 본 처분권에 수반되는 권한행사로써 본처분권을 행할 권한도 내포된다고 봄
- 따라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에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 법무부 검토결과

-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므로 신고기간 설정·운영 자체는 이견 없음
- '02.3.31이전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신고기간 조성 필요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이미 입건되어 있으므로 완전 면책은 부적절, 신고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약속

□ 검토의견

- 다른 부처의 자진신고기간 운영사례, 변호사 및 법무부 자문결과 법적 근거없이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가능
 -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적 판단사항

② 자진신고에 의한 처벌면제는 위법행위의 치유가 완료되었을 때가 바람직 하나 위법행위 치유(유해성 심사 완료)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가 불가능한 문제점 검토

- 평상시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실험성적서 생산에 30~60일이 소요되고, 유해성 심사에도 45일 소요
 -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유해성 심사 신청이 증가할 경우 실험성적서 생산 및 유해성 심사 소요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실험성적서를 생산할 수 있는 GLP기관(외국의 GLP기관 인정)이 국내 6개소⁵⁾ 뿐이고, 심사인력도 국립환경연구원 심사단 6명에 불과
-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유해성 심사 신청이 증가할 경우 신고기간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실험성적서 생산 및 유해성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법사항을 우선 신고토록 하고, 치유를 위한 유해성 심사는 신고후 별도로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조치방향

- 신고기간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 인정하고,
- 실험성적서 생산 지연에 따른 신고기간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기관에 실험 의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실험의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5) GLP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LGCI화학기술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바이오톡스텍,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주)메드빌

(붙임 2)

공고 제2005 - 호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에 관한 공고

법무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05. 4. 1. ~ 9. 30.(6개월간, 유해성심사 신청기간)

2. 신고대상

- 2002. 4. 1~2005. 3. 31 기간에 수입한 화학물질 중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 ※ 2002. 3. 31 이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대상은 아니나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국립환경연구원(☎ : 032-560-7133-39)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 신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848-092-6)
- 신고방법
 - 신규화학물질은 별지 신청서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간내 유해성 심사를 신청
 - △ 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 실험을 의뢰하

- 였으나 의뢰일부터 60일이 경과되어도 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신고서에 실험 의뢰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은 별지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기간내 신고
 - ☞ 자진신고 서식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자 혜택

-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제,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 동안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허용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유해성 심사 이행)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2006.1.1 이후 유해성 심사 미이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됩니다.

2005. 3.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환 경 부 장 관 광 결 호

(붙임 3)

안 내 문

-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100

1990

가

(2004.12)

2006.1.1

1. **자진신고기간** : 2005. 4. 1.~ 9. 30.(6개월간)

2. 신고대상

- 2002. 4. 1~2005. 3. 31 기간에 수입한 화학물질 중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 ※ 2002. 3. 31 이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대상은 아니나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국립환경연구원(☎ : 032-560-7133-39)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 신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848-092-6)
- 신고방법
 - 신규화학물질은 별지 신청서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간내 유해성 심사를 신청

- △ 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 실험을 의뢰하였으나 의뢰일부터 60일이 경과되어도 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신고서에 실험 의뢰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은 별지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기간내 신고
- ☞ 자진신고 서식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자 혜택

-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제,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 동안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허용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유해성 심사 이행)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사항이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06.1.1 이후 유해성 심사 미이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됩니다.

2005. 3.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환 경 부 장 관	곽 결 호

